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-9호 도시관리계획[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20호(2014.1.16.)로 결정된 「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」 중 획지계획 변경(공동개발)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·고시합니다.

○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변 경		비고
지 번	획지계획	지 번	획지계획	
신림동 706-6 신림동 706-91 신림동 808-324(일부)	공동개발 (지정)	신림동 706-6(일부) 신림동 706-91 신림동 808-324(일부)	공동개발 (지정)	
신림동 706-92 신림동 808-324(일부)		706-6(일부) 신림동 706-92 신림동 808-324(일부)		

3.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(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) 참조 : 생략

4. 열람 및 열람 장소

○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02-879-636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9-10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97호(2007.11.01)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43호(2008.10.02) 구역변경(경미)고시,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9-50호(2009.09.17.) 구역변경(경미)고시,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0-64 (2010.07.06) 구역변경(경미)고시,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

2019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○ 「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신림동 706-6 일대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에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2. 도시관리계획(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2013-42호(2013.05.30)로 구역변경(경미)고시된 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 봉천제12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자금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봉천제12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28,321.5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명칭(소재지) : 봉천제12-1구역주택

재개발정비사업조합(쑤고개로 9, 101호)
나. 대표자 성명(주소) : 전정숙(쑤고개로 9, 101호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9개월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19. 01. 17.

6. 변경 사유 및 내용 : 자금계획 변경

변경내용 (사업비)		사 유
변경 전	변경 후	
119,317,010,000원	157,024,000,356원	사업비 증가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-11호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, 제24조 제1항, 제25조

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폐지 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19년 1월 2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신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관악구 난곡로24가길 18	2010년 06월 03일	난곡로의 시작지점 오른쪽 24번도로 에서 순차적으로 분기되는 도로	관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11번도로	난곡동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	비고
관악구 난곡로24가길 18	2019년 1월 24일	건물철거	난곡동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(☎02-879-6634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

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